

目 次

I. 序 言	1
II. 韓國經濟의 構造的 特性과 企業集團	3
(1) 開發途上經濟와 企業家精神	3
(2) 經濟成長과 企業의 多邊化	4
(3) 政府의 經濟政策과 經濟力集中	5
(4) 經濟成長과 企業의 資金調達	6
III. 企業集團의 規制論과 支持論의 一般的 論議	7
(1) 經濟的 側面	7
(2) 政治·社會的 側面.....	11
(3) 所得과 富의 分配側面	13
IV. 公正去來法改定案의 基本的 問題點.....	16
(1) 韓國資本主義의 特質	16
(2) 公正去來法의 目的과 株式保有制限	17
(3) 經濟的 目的과 政治·社會的 目的의 區分	18
(4) 構造規制와 行態規制	19
(5) 所有集中	19
(6) 尖端産業과 國際競爭	20
(7) 株式保有制限과 企業의 資金調達	21
(8) 새로운 價値觀의 確立	22

I . 序 言

- 어떠한 經濟政策이나 經濟活動도 그에따라 得과 失이 함께 뒤따르기 마련이며 一般的 法則이다. 西歐에서는 이같은 得失兩面の 思考가 일찍부터 定着되어 있기때문에 어떤 選擇이나 經濟政策을 수립할 때 便益과 費用의 概念을 導入, 이를 客觀化하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이같은 客觀化를 위한 充分的 討論의 場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政策選擇을 함으로써 政策의 實行過程에서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다.
- 최근 公正去來法改定案에 나타난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問題 역시 우리社會에서 企業集團이 가지는 得과失의 充分的 檢討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蓋然性에 기초한 先驗的 判斷에 偏向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經濟力 集中은 規制되어야 한다는 方向으로 흐르고 있다.
- 그러나 經濟力 集中 問題의 對象인 企業集團의 形成過程, 發展의 動因, 集團과 單獨企業, 集團과 集團과의 關係, 國內 企業과 外國 多國籍 企業과의 競爭能力과 拮抗力, 市場의 不完全性の 정도 등에 대한 分析은 勿論, 同 規制가 우리 産業의 發展에 長期的으로 影響을 미친다는 點에서 앞으로의 産業技術 變化가 異種技術間의 複合力의 進展, 先進企業에로의 「캐취·업」效率性 등이 綜合的으로 分析·評價되어야 한다.
- 經濟力 集中의 視角은 租稅制度의 調整을 除外하고 보면 政治·社會的 觀點인데 이것이 理論 次元에 치우칠 경우 經濟自體의 論理인 效率性を 저상시켜 내일의 向上된 衡平에 逆作用을 할 수도 있다는 點에서 衡平和 效率性 두가지를 兩立시키면서 調和를 이루는 슬기가 필요하다.

- 實物部門의 發展에 비해서 낙후된 金融部門이 整備되지 않은채 株式 保有制限과 같은 構造規制는 企業의 生動力을 沮喪시켜 産業構造高度 化와 成長에 逆機能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며 行政權限의 극대화로 公共의 過剩介入의 素地가 크다는 點에서 集中自體의 得失은 勿論, 公共介入의 實效성과 介入에 따른 코스트 등의 綜合的 分析이 필요 하다.

Ⅱ. 韓國經濟의 構造的 特性과 企業集團

(1) 開發途上經濟와 企業家精神

○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은 經濟成長의 主導的 役割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러한 過程에서 經濟力이 이들 소수의 企業集團에 集中되어 왔기 때문에 經濟力 集中의 原因으로서 우선 企業集團에 內在하는 企業家能力 (Entrepreneurship)이 經濟發展과 相互作用을 통하여 어떻게 發現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開發途上經濟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勞動契約이 不완전하고 生産契約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모든 生産要素가 반드시 市場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의 經濟에서는 企業家精神과 經營組織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經濟發展過程에서 중요한 經營組織의 機能은 市場去來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生産要素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必要資金의 調達, 契約의 締結, 最終經營責任 및 危險과 不確實性의 負擔, 새로운 經營情報의 摸索 및 活用, 勤勞者들에 대한 指導力提供 등 企業活動에 필요한 서비스市場이 완전하다면 각각 賣買될 수 있지만 그러한 市場이 형성되지 않거나 또는 不完全한 경우에는 企業家は 스스로 이러한 결함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企業集團은 市場에서 不完全하게 거래되는 稀少한 生産要素를 보유하는데 따르는 準地代 (quasi-rent)를 획득하기 위한 組織構造로 간주할 수 있다. 즉, 企業集團이라는 組織은 開發途上國家에서 1次的 生産要素, 危險과 不確實性에 대한 市場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의 反應으로 把握될 수 있다는 것이다.

○ 經濟發展의 過程속에서 企業家가 갖는 機能은 市場失敗條件에 대한 微視經濟的 反應으로 理解하는 理論은 우리나라에서도 通用될 수 있을 것이다.

√ (2) 經濟成長과 企業의 多邊化

○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獨占的 大企業에 의해서가 아니라 企業集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企業集團은 정의상 多邊化를 함축하므로 결국 經濟力集中의 過程은 企業集團의 多邊化過程으로 설명될 수 있다.

○ 開發途上經濟에서 開發初期에는 成長에 필요한 資本財를 國內에서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이 없으므로 經濟發展은 주로 先進技術의 단순한 이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先進技術은 원래 大規模 市場을 대상으로 발달된 것이므로 이를 협소한 開發途上國의 市場에 이식한다면 그 規模性和 學習效果 때문에 獨寡占的 市場構造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開發途上經濟에서 企業이 1차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는 大規模 生産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消費財 産業 및 大量消費되는 中間財 産業이며 이러한 産業에서의 擴張機會가 消盡되면 企業은 점차 消費의 절대규모가 작은 財貨로 多邊化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企業集團이 형성되며 원초적으로 相互競爭關係가 약한 企業들도 多邊化가 계속되면서 조만간에 같은 市場에서 競爭하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 集中 내지 多邊化過程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開發初期段階에서는 大衆消費財産業에서 獨寡占的 大企業이 발생하였고 輸入制限과 國內의 競爭的 進入에 대한 制限 등 各種의 構造的·制度的 進入障壁으로 인하여 원초적으로 確保된 獨占的 地代는 持續적으로 維持될 수 있었으며 企業內에 축적된 人的·物的·金錢

的 剩餘能力을 活用하기 위하여 새로운 市場으로 進出함으로써 企業集團이 형성된 것이다. 그 후 1970年代 후반에는 다수의 企業集團이 海外建設, 重化學工業分野에 진출함으로써 企業集團間的 競爭으로 發展하였다.

○ 80年代 企業集團의 行動樣式에 注目할 事項의 하나는 한편에서 多邊化가 계속되고 資本的 結束以外에 企業集團內 異種企業間 技術的 有機關係가 強化되고 있다는 點이다. 機械와 電子, 化學과 機械, 光學과 電子 등으로 지금까지의 複合力을 背景으로 한 新結合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産業高度化의 可能性을 提示해 주고 있다.

(3) 政府의 經濟政策과 經濟力集中

○ 우리나라에서 企業多邊化 또는 經濟力集中問題가 제기된 것은 60年代의 外資導入에 의한 輸出드라이브政策과 70年代의 重化學工業政策 등의 強力한 추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政策金融, 租稅減免 등 開發戰略과 關係가 있으며 이들 大型工業의 育成을 위해서는 單獨企業보다 企業集團에 의한 育成이 技術, 人力, 組織面에서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 더우기 當局에서 不實 또는 倒産企業의 處理過程에서 破産정리를 하지 않고 企業集團에 인수토록 한 이면에는 부도처리할 경우 經濟的, 社會的 摩擦코스트가 커서 이를 最小化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財政支援에 의한 不實企業의 回生보다는 能力있는 企業에 債務延期 등에 의한 方法이 波及影響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貫行은 短期的으로는 企業集團의 財務構造 惡化要因이 되었으나, 長期的으로는 인수된 不實企業의 經營이 好轉됨으로써 企業集團의 外形 및 業種擴大의 要因이 되어왔다.

V

(4) 經濟成長과 企業의 資金調達

○ 企業의 資金調達は 일반적으로 利益의 內部留保, 株式公募, 借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나, 開發途上國에서는 貯蓄財源의 低水準과 資本市場의 不完全性으로 인해 公募를 통한 大衆資本動員은 매우 어렵다. 반면에 投資對象은 自動車, 半導體 등 大型投資가 所要되는 資本集約的 産業이기 때문에 既存 輕工業의 內部留保利益으로는 方대한 資金需要를 充當할 수 없는데 이것이 外部金融依存度를 높인 要因이다.

○ 그리고 이같은 大型投資時 企業集團內 1 個 企業만으로 最小限의 自己資本動員이 어렵기 때문에 集團內 여러 企業이 共同으로 協調出資를 통하여 이를 可能토록 한 것이며 相互株 保有같은 것이 資金調達 能力 制約에서 出發된 것이다.

○ 또한 企業集團의 相互株 保有는 만성적인 超過金融需要와 企業別 限度金 등 貸出의 配給 (Rationing) 方式이라는 金融市場의 不完全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貸出의 경우 企業의 成長성과 資産의 運用 問題보다는 自己資本中心의 貸出貫行이 그 基準이 됨으로써 더 많은 貸出限度를 얻기 위해서 相互株 保有를 擴散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相互株保有는 公開法人의 최소한의 要件을 충족하기 위한 手段으로 活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法人稅, 綜合所得稅, 相續稅 制度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Ⅲ. 企業集團의 規制論과 支持論의 一般的 論議

(1) 經濟的 側面

	肯 定 的 立 場	否 定 的 立 場
企業集團과 經濟成長	<p>- 市場을 통한 資源의 配分이 效率的이나 原料市場, 金融市場이 不完全한 경우 企業集團을 통한 配分이 低코스트로 效率性이 높을 뿐 아니라 빠른 成長을 이룰 수 있는 것임.</p> <p>- 最近의 國際的 産業技術變化는 機械와 電子, 光學과 電子 등으로 異種技術의 接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企業集團에 의해서 빠른 新結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産業高度化에 기여함.</p> <p>- 企業集團은 市場機會에 對應하여 內部的 다양한 剩餘能力을 活用하여 追加적 資源負擔을 最小로 할 수 있음.</p>	<p>- 企業集團은 市場支配力 내지 複合力을 행사하여 超過利潤을 獲得하여 全體的 面에서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沮害하고 經濟成長을 沮害함.</p> <p>- 企業集團은 企業의 新設보다는 既存企業의 引受合併을 통하여 事業을 擴張하려고 함으로 新規投資 및 生産能力 擴大를 통한 經濟成長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p>

	肯 定 的 立 場	否 定 的 立 場
企業集團과 競爭制限行爲	- 企業集團의 相互補助 또는 進入障壁을 통하여 모든 競爭企業을 除去하는 데는 그 代價가 크기 때문에 限界가 있으며 또한 現實的으로 他企業集團이 같은 方式으로 競爭하기 때문에 集團間 談合을 하지 않는 이상 集團間 競爭은 더 弛緩할 수 있음.	- 企業集團은 相互補助(cross subsidization)를 통해 競爭中小企業의 除去, 進入障壁設置, 潛在的 競爭企業의 排除, 談合行爲(reciprocal dealing, mutual forbearance)등을 통한 競爭制限 可能性이 큼.
技術革新	- 基礎科學이 취약한 後進國의 技術革新은 組織化된 研究人力과 施設을 가진 大企業에서 이루어진 것이 日本의 例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企業內 研究水準은 大企業쪽이 훨씬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음.	- 技術革新은 基本的으로 企業規模에 比例하는 것이 아니고 發明家, 中小企業, 大企業이 다같이 할 수 있으며 超過利潤에 안주하는 大企業은 技術革新動機가 微弱할 수 있음(Sony, Polaroid 등이 초기에는 小企業이었음).
效 率 性	- 企業集團은 그안의 資源을 共有하고 多市場活動間에 존재하는 共同要素로 인하여 包括的인 共同效果(Synergy	- 企業集團은 그 組織의 肥大化로 인하여 利潤動機가 低下되며 官僚組織化되어 全體的 效率性이 떨어짐.

	肯 定 的 立 場	否 定 的 立 場
<p>國內市場 拮 抗 力</p>	<p>effect) 를 가져옴으로써 集團內 資源의 效率을 極大 化함.</p> <p>- 전연 다른 業種의 新結合을 통해 새로운 商品이 속출하고 있는 技術變革期에 是 專門化보다는 複合力이 보다 큰 威力을 發揮할 것임.</p> <p>- 公共의 過剩介入 또는 與件의 未成熟으로 市場機能이 正常的으로 作動되지 않는 開途國의 경우 組織에 의한 對應이 불가피함.</p> <p>- 開放經濟에 있어서는 多國籍巨大企業이 國內市場 占 有率을 擴大하기 위하여 公 격적인 行爲를 할 경우 經 營과 成果 등이 劣勢인 國 內單獨企業으로는 이에 對 抗하기 어려우며 相互補助 가 可能한 企業集團이 철 쥌 높은 拮抗力을 發揮함.</p>	<p>- 非專門分野로의 事業擴張으로 專門化보다 效率이 떨어지 며 잘못된 意思決定으로 全 體企業의 效率性 低下.</p> <p>- 經濟의 主要部門이 소수의 企業集團組織에 의하여 이 루어짐으로 市場機能이 退 化하는 結果를 招來함.</p>

	肯 定 的 立 場	否 定 的 立 場
國際競爭力	- 輸出商品의 高度化와 多樣化, 商品과 金融의 結合에 의한 輸出이 불가피하며 또한 不安定한 國內市場의 景氣變動을 效率的으로 克服하기 위해서는 企業集團의 複合力이 安定性을 가짐.	-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輸出 比重이 크게 격차가 없음.
物 價	- 價格의 下方硬直性은 農産物과 같이 原子的 生産者 경우를 除外하고는 모든 商品市場에서 一般的 傾向이며 企業集團에 局限된 것이 아님.	- 需要減退시 價格固定 및 出荷量의 調節 등으로 價格의 下方硬直化, 需要增加時는 獨占利潤 極大化를 위해 價格引上 및 其他 原價上昇要因을 消費者에게 전가하여 所得分配을 歪曲시킴.
倒産時 波及 影響	- 非效率的 企業은 適者生存에 따라 倒産되는 것이 原則임.	- 企業集團의 不實化 또는 倒産의 경우 經濟的·社會的으로 커다란 損失을 發生시키며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救濟金融 등으로 資源의 非效率的 配分을 加速化시킬 것임.

(2) 政治·社會的 側面

	肯 定 的 側 面	否 定 的 側 面
政 治 的 影 響 力	- 企業集團은 그 자체가 다 양한 利害를 가지고 있고 外國의 경우를 보면 單一 企業集團의 經濟的 利益代 辯보다 多數의 利益을 調 整해야 하기 때문에 立法 過程에서 影響力 行使에는 限界가 있음.	- 企業集團은 막강한 資金力 과 有能한 經營陣을 動員 하여 立法過程에 影響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系列企 業이 地域的으로 널리 分 散되어 있는 企業集團은 相 對的으로 많은 立法議員에 게 影響력을 행사할 수 있음.
規制의 政治·社會的 目的	- 政治·社會的 要求를 效率 性이 더욱 重視되는 經濟 에 반영할 경우 상당한 規 制코스트를 支拂해야 하며 따라서 이의 規制는 市場 競争을 維持하는 方向에서 補完하는 것이 바람직함.	-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는 經 濟力集中에 대한 우려 또 는 市場效率性側面보다 國 民의 批判的 認識을 緩和 하고 社會諸勢力의 意見收 斂을 위해 필요함.
社會的弊害	- 企業集團은 規模가 크면 클 수록 제반 社會的 問題에 대한 壓力을 많이 받으며 意思決定過程에서 더 많은 政治·社會的 要請을 받아 들이지 않고서는 存立하기 어려우며 특히 韓國과 같 은 경우는 經營者의 自由	- 企業集團의 肥大는 상당한 裁量權을 행사하며 그 裁 量權의 活用如何에 따라 地 域社會 등에 不利益을 끼 칠 수 있음.

	肯 定 的 側 面	否 定 的 側 面
所有의 集中과 成長過程	<p>裁量權이 많은 制限을 받도록 制度的 裝置가 되어 있음.</p> <p>- 經濟發展에 따라 企業家能力的 稀少性은 줄어들며 蓄財를 해야한다는 次元보다는 企業家로서의 社會的 認定을 더욱 重視히 여기게 됨.</p> <p>- 所有의 集中은 企業集團의 實質的 利點과 분리하여 富의 分配라는 次元에서 생각해야 하며 創業世代가 지나면 自然적으로 解消될 것임.</p> <p>- 創業世代가 지나면 個人所有보다는 法人에 의한 所有라는 法人資本主義 方向으로 가게 될 것임.</p>	<p>-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國民이 企業集團의 形成發展이 企業家的 能力보다는 銀行融資, 租稅支援 등으로 利潤을 蓄積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公共的 支援에 비해서 그 成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함.</p> <p>- 所有의 集中은 그 妥當性 여부에 관계없이 社會的 緊張을 造成시키며 특히 韓國과 같은 同質的 社會에서는 그 치유가 있어야 함.</p>

(3) 所得과 富의 分配側面

	肯 定 的 側 面	否 定 的 側 面
所得과 富의 分配	<p>- 獨占企業의 超過利潤은 獨占力을 獲得하기 위한 生産要素를 구입하는데 거의 전부 所要되므로 消費者의 富는 獨占企業의 株式所有者에게로 移轉되지 않음.</p> <p>- 미래의 獨占利潤이 제거될 경우 현재의 株式所有者는 富의 損害를 招來, 만약 現在의 所有者가 初期의 所有者와 동일하다면 富의 再分配效果는 결국 중도적이 될 것임.</p>	<p>- 大規模 獨寡占企業의 市場支配力을 다수의 消費者로부터 소수의 企業集團의 所有者에게로 所得을 移轉시킨.</p> <p>- 獨占利潤에 대한 기대는 株式價格에 資本化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初期의 株式所有者가 아닌 現在의 株式所有者는 그들의 投資로부터 超過利潤을 전혀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獨占企業으로부터 收益을 얻는 사람은 一般階層이 아닌 高所得階層임. 따라서 高所得層의 所得의 限界效用이 低所得層의 그것보다 낮다는 것을 認定한다면 總社會厚生은 그러한 移轉만큼 減少하게 됨.</p>

	肯 定 的 側 面	否 定 的 側 面
<p>勞 動 者 收 入 (labor earnings)</p>	<p>- 獨 占 獲 得 을 위 한 競 爭 中 에 서 어 떤 方 法 은 社 會 的 으 로 生 產 的 일 수 있 으 므 로 그 것 을 순 수 한 社 會 的 損 失 로 볼 수 는 없 음.</p> <p>獨 占 企 業 이 獨 占 的 位 置 를 얻 기 위 해 投 資 하 는 것 을 認 定 하 여 야 한 다 면, 獨 占 企 業 이 그 들 의 위 치 를 지 키 기 위 해 投 資 하 는 것 도 인 정 해 야 하 며 결 국 問 題 는 game theory 的 인 問 題 로 귀 착 하 여 그 결 과 도 아 주 복 잡 하 여 짐.</p> <p>- 地 代 追 求 行 爲 에 대 한 支 出 規 模 는 정 확 히 測 定 할 수 없 음.</p> <p>- 市 場 力 을 保 有 한 企 業 은 여 러 가 지 이 유 로 그 들 의 勞 動 者 에 게 보 다 높 은 賃 金 을 支 給 함.</p>	<p>- 더 우 기 獨 占 利 潤 의 移 轉 效 果 가 중 도 적 이 거 나 그 다 지 크 지 않 다 고 認 定 하 더 라 도 獨 占 地 代 (monopoly rent) 를 획득 하 기 위 한 競 爭 으 로 인 하여 社 會 的 浪 費 를 招 來 하 게 됨. 그 리 고 地 代 追 求 行 爲 (rent-seeking) 에 더 우 많 은 資 源 이 支 出 된 다 면, 獨 占 의 分 配 的 役 割 은 더 우 복 잡 해 짐.</p> <p>- 集 中 된 產 業 에 서 더 높 은 賃 金 을 支 給 하 며 이 것 은 그 產 業 에 從 事 하 는 勞 動 者 의 質 을 높 이 는 것 을 可 能 케 함. 그 결 과 集 中 產 業 의 勞 動 者 의 賃 金 은 그 들 이 提 供 하 는 서 비 스 의 質 과 비</p>

	肯 定 的 側 面	否 定 的 側 面
	<p>-市場力の 指標(集中, 進入障壁)가 높거나 市場力の 直接的 測定值(利潤)가 높을 때 經營者의 報酬가 獨占 rents 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p>	<p>較할 때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收入은 獨占企業의 rents 의 아주 일 부분이거나 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음.</p> <p>-企業의 最高經營者의 報酬는 市場集中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그 水準은 進入障壁이 존재할 때 더욱 높아짐.</p> <p>또한 企業의 利潤이 經營者의 報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p>

IV. 公正去來法改定案의 基本的 問題點

(1) 韓國資本主義經濟의 特質

○ 經濟力集中은 다수인의 分權主義에 입각하여 출발하나 競爭을 통해 集中되는 것이 資本主義體制 그 자체 메카니즘이다. 따라서 經濟力集中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經濟理念으로 삼고있는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特質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西歐의 資本主義는 市民權의 確立과 함께 個人의 自由와 責任, 그리고 개인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政治的 民主主義와 함께 발전되어 온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된 集中化現象은 國家의 公權力으로 적절히 規制함으로써 資本主義의 價値觀을 유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資本主義體制는 독립이후 政治的 民主制度와 함께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家父長的 行政國家의 행동양식과 함께 經濟開發이라는 國家目標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經濟가 個別主體의 自由意思보다는 총체적인 國家意思로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私經濟部門에 대한 政府干渉이 보편화되어 私有財産制度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 이외에는 본래적 의미의 資本主義的 企業特性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經濟力의 集中化現象은 반드시 自由競爭의 産物이 아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政府規制下에서 企業集團에 의한 힘이 충분히 발휘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현재도 金融與信, 貿易管理法, 例外立法이 많이 실시되고 있어 企業集團이 經濟力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構造規制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또 構造規制를 실시하면 우리나라에서도 分權的 自由競爭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인지는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2) 公正去來法の 目的과 株式保有制限

○ 이번 公正去來法改定案의 중요한 목적은 企業集團系列企業의 株式所有의 限度額을 形式的 基準에 의해 規制하여 企業의 系列化 및 企業集團의 형성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株式保有制限의 理論的 根據는 經濟力集中의 排除 및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私的獨占과 不當한 去來制限이라는 경쟁제한 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論理는 두가지 기본적인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經濟力集中 그 자체를 배제하고자 하는 規制根據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두번째로 競爭制限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연 株式所有制限을 형식적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規制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 일반적으로 經濟力集中 그 자체는 競爭制限的이 아니며 단지 競爭制限的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따라서 經濟力集中 그 자체는 公正去來法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競爭” 또는 “自由企業制度”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效率性を 높일 수 있는 集中化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經濟的 效率性의 관점에서 보면, 分權的 市場構造가 항상 效率的일 수는 없다. 企業集團은 각 계열기업의 자원공유와 여러 시장활동간의 共通要素로 인하여 多生産物 및 多工場體制의 規模의 經濟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共同效果 (synergy effect)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稀少資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企業集團의 競爭制限行爲는 현재의 公正去來法 제7조~ 제10조의 企業結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의 競爭의 實質的 制限」 여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라는 요건의 해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이 조항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도 아마도 垂直的 結合 혹은 複合的 結合 그 자체가 「競爭의 實質的 制限」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때문에 垂直的·複合的 結合, 즉 企業의 系列化 및 企業集團을 競爭制限性과는 관계없이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競爭制限 行爲의 예방으로서 形式的 基準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는 매우 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經濟的 目的과 政治·社會的 目的의 區分

○ 우리나라에 있어서 企業集團이 갖는 문제는 순수한 經濟的 效率性의 영역을 벗어난 政治·社會的 次元의 문제로 되어 있으며 그만큼 個人的 價値觀과 客觀的 事實이 존재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經濟力 集中對策의 방향설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 이와같이 政治·社會的 次元에서 企業集團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經濟力集中의 개념이 一義的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一般集中과 관련되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經濟力集中은 「經濟主體에 귀속된 經濟要素(附加價値, 生産額, 屬傭者數, 資本量, 支配企業數 등)의 集中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개념은 經濟的意味로서 富 또는 所有의 集中을 일컫는 政治·社會的 概

念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 대책도 별도로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 企業集團에 대한 대책은 構造規制로 인한 效率性を 파괴하지 않으면서 公平性を 提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構造規制와 行態規制

○ 經濟力集中의 대책으로서 總額出資의 規制등 數量的 基準에 입각하여 企業集團의 多邊化를 구조적으로 事前規制하게 된다면 행정적 편의는 기할 수 있겠지만 硬直性を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비록 行態規制 중심의 事前規制는 충분한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나 경제활동의 본래적 성격에 비추어 行態規制를 지향하여 企業의 自由를 원천적으로 존중하되 이에 수반될 수 있는 運用上의 문제점은 행정능력을 배양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公正去來法改定案과 같은 構造規制는 運用面에서의 實效성은 의문시된다. 한가지 예를들면 이 改定案에서 相互出資 및 總額出資의 제한은 독립주체간의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위 「事業部」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系列企業으로서 활동하게 되면 일단 법의 적용대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企業集團의 문제는 大企業 문제로 바뀔뿐 企業集團의 規制에 대한 실질적 이득은 없게 될 것이다.

(5) 所有集中

○ 經濟力集中 문제의 핵심이 所有集中에 있는 한 所有分散은 당연히 중요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 所有의 문제는 企業集團, 大株主의 富의 蓄積과 企業의 所有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富의 不平等分配와 이에 병행하는 富의 非生産的·投機的 利用, 즉 富의 蓄積過程上의 不公平성과 非效率性 문제는 단순히 企業集團의 大

株主에 의한 所有集中을 초월하는 문제로서 그 대책은 보편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즉 전반적인 經濟倫理 및 經濟秩序의 정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 企業所有 문제의 대책으로서는 종래 企業所有集中의 한가지 원인이 借入金에 의존한 資金調達에 있었으므로 우선 企業公開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資本參與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國民所得水準의 向上과 所得分配改善, 企業體質 強化, 專門經營人の 責任經營意識 고양, 資本市場의 與件造成 등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장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 企業主 世代交替와 相續稅로 개인적 富의 集中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

(6) 尖端産業과 國際競爭

○ 國際競爭에서의 優位를 뒷받침하는 것이 企業의 規模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으나 國際競爭에서 規模화와 大量生産의 이점은 아직도 절대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韓國企業의 실상을 國際的인 관점에서 客觀的으로 관찰한다면 우리나라의 財閥企業은 아직 세계적인 大企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 더구나, 國際競爭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尖端産業分野의 진출을 위해서는 비교적 자금의 動員力이 크고 技術의 蓄積이 양호한 大企業 내지 企業集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尖端産業의 특성은 막대한 投資費用, 큰 危險負擔, 規模의 經濟性을 필요로 하며 韓國經濟의 發展段階로 보아 아직 中小企業이 이러한 水準에 도달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번 公正去來法改定案의 핵심이 되고있는 經濟力集中 억

제조치는 技術蓄積과 經營能力을 보유한 企業集團의 關聯産業으로의 확장이나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을 위한 投資意慾과 經濟活動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開放化로 企業間의 國際競爭이 격화되고 있는 오늘의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경제력 확립을 위한 企業能力의 強化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株式保有制限과 企業의 資金調達

○ 企業의 資金調達手段은 利益의 内部留保, 株式公募, 借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資本形成의 기반이 약한 현재의 단계에서는 企業의 資金調達は 外部金融에의 의존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 또한 株式資金의 供給狀況 즉 株式의 분포상황을 보면 企業의 資本은 대부분 金融機關 및 法人企業에 의해서 供給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의 企業資金調達の 형태는 資金의 安定성과 低費用을 동시에 만족하는 時價發行増資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金融機關이나 法人企業에 의한 인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갈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의 순수한 經營能率의 추구에 바탕을 둔 經濟合理性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企業의 支配・被支配와는 관계없는 문제이다(日本의 所有者別, 株式分布의 推移 參照).

○ 公正去來法改定案은 大規模企業集團에 의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기 위해 기도되고 있는 것이지만 企業이 자본이라는 형태로 실시하는 資金調達の 대부분은 法人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法人企業에 의한 株式保有는 發行企業에 있어서는 오히려 安定株主로서 他人에 의한 매점등 經營權의 탈취에 대한 방파제로서 뿐만아니라 資金

調達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소망스러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 따라서 總額規制를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의 增資등에 의한 資金調達が 그 비중을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資金調達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이 新規成長産業分野로 진입한다거나 産業分野의 일부를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그 經營效率을 추구하는 기업의 당연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競爭促進에 의해서 競爭效率을 높이고자 하는 公正去來法の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與信管理등으로 현재 일부의 기업에서는 主去來銀行으로부터의 資金調達が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지나치게 總額規制를 실시할 경우 기업의 資金調達は 어려워져 經營效率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資本의 空洞化現象과 이의 악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같은 피해는 銀行의 대출과정에서 규정을 보완한다면 이같은 소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8) 새로운 價値觀의 確立

○ 우리나라의 經濟力集中에 대한 대책과 方向設定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企業集團의 成長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企業家精神의 발휘에 그 원동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갖은 特惠와 消費者의 犧牲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대다수의 국민이 내리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大企業에 대한 이와같은 斜視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 그러나 기업은 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대다수의 國民은 企業의 일

원이며 企業과 國民은 供給者와 消費者라는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현시점에서는 企業과 社會間의 이러한 社會的 連帶關係를 바로 인식하고 균형있는 상호관계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물론 財閥이라 불리우는 大規模企業集團의 肥大化를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企業集團의 불공정한 경제행위 그 자체를 비난하고 규제해야지 企業集團의 存在 자체를 부정하거나 企業과 社會間 관계를 본원적 적대관계로서 부각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경제의 현실로 보아서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을 꺾어 보다는 다른 목적의 동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相續稅등 여러 법률장치와 企業公開, 興信制限등 각종의 행정조치로, 그리고 企業集團·所有者의 자각과 기업의 倫理提高, 國民들의 철저한 社會的 監視와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등으로 企業集團의 經濟力集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間接規制方式으로 그 弊害를 극소화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日本の 上場企業數와 所有者別 株式分布의 推移

(單位：%)

區分 年度	上場企業數	金融機關	投資信託	證券會社	法 人	個 人	外 國 人
1950	764	12.6	-	11.9	11.0	61.3	-
1955	783	19.5	4.1	7.9	13.2	53.2	1.8
1960	785	23.1	7.5	3.7	17.8	46.3	1.4
1965	1,577	23.4	5.6	5.8	18.4	44.8	1.8
1970	1,580	30.9	1.4	1.2	23.1	39.9	3.2
1975	1,713	34.5	1.6	1.4	26.3	33.5	2.6
1976	1,716	35.1	1.4	1.4	26.5	32.9	2.6
1977	1,724	35.9	2.0	1.5	26.2	32.0	2.3
1978	1,709	36.6	2.2	1.8	26.3	30.8	2.1
1979	1,723	36.9	1.9	2.0	26.1	30.4	2.5
1980	1,729	37.3	1.5	1.7	26.0	29.2	4.0
1981	1,745	37.3	1.3	1.7	26.3	28.4	4.6